

합병종료보고의 공고

당사는 2023년 6월 27일 이사회에서 케이지모빌리티홀딩스 주식회사와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고, 그에 따라 양 회사에서 각기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여 합병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본건 합병의 내용

- 가. 합병방법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 나. 합병비율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존속 회사와 소멸회사간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함.
- 다. 합병신주의 종류와 주식의 수 :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소멸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는 존속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은 없음.
- 라.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변경되지 아니함.

2. 본건 합병 진행 경과

일시	진행경과
2023년 05월 26일	합병계약체결 이사회 결의
2023년 05월 26일	합병 계약체결
2023년 06월 12일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및 소규모합병 공고
2023년 06월 12일~ 2023년 06월 26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기간
2023년 06월 27일	합병계약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2023년 06월 28일~ 2023년 07월 31일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2023년 08월 01일	합병기일
2023년 08월 02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2023년 08월 02일	합병등기 예정일

3.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3년 08월 02일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동농공단지길 59
대표이사 엄 기 민